#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45 발의연월일: 2021. 2. 2.

발 의 자:이철규·최승재·김선교

윤창현 · 김정재 · 이주환

엄태영 · 한무경 · 권명호

구자근 · 정운천 · 윤영석

허 영·백종헌·이양수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책자금 누적 연체가 2020년 7월 기준 3,123건, 1,586억원이 발생함. 이는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이고, 금년 4월부터 급증한 코로나19 대출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고려하면 향후 연체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7월 한 달에만 부실징후기업이 481건으로 나타났음. 이 통계는 올 2분기 539건에 근접한 수치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이자조차 갚을 수 없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 법률 제 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유예"를 "유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고 그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
환 <u>유예</u> ) ① 공단은 제22조제3	환 <u>유예 등</u> ) ①
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	당하는 경우, 그 상환 기간을
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고 그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할 수 있
	<u>다</u> .
<u>&lt;신 설&gt;</u>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
	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
	를 입은 경우
<u>&lt;신 설&gt;</u>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
	<u>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